


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조치결과보고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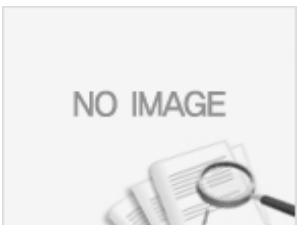
〔남산예정자락 재생사업(공원 및 주차장)〕

□ 점검일시 : 2018.10.22 (월)

□ 조치결과

◆ 점검자 : 전용현

| 지적내용 | 점검사진 | 조치일자 | 조치사진 |
|---|---|---|---|
| | | 조치내용 | |
| <p>○ 추락재해 예방</p> <p>- A2작업장 기초저판 상단에서 굴착면 바닥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바람.</p> <p>※ 건설안전기본지침 P-12 (추락재해예방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)</p> |  | 2018.10.23 |  |
| | | <p>1. 구조물 단부에 안전난간대 설치하여 근로자 추락재해 예방</p> | |
| <p>○ 추락재해 예방</p> <p>- 건축물 기초 작업장의 사다리는 아웃트리거가 손상되어 있으니 보수 후 사용하기 바람.</p> <p>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 4 (사다리)</p> |  | 2018.10.24 |  |
| | | <p>1. 손상된 사다리 아웃트리거 보수</p> | |
| <p>○ 추락재해 예방</p> <p>- 소방방재본부 리모델링 작업장의 시스템 비계의 일부에서 안전난간이 미설치되어 있으니 보완 요망.</p> <p>※ 건설안전기본지침 P-12 (추락재해예방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)</p> |  | 2018.10.23 |  |
| | | <p>1. 소방방재본부 리모델링 작업장의 시스템 비계의 일부 안전난간 미설치 구간에 안전난간대 설치</p> | |

| | | | |
|--|---|--|---|
| <p>○ 추락재해 예방</p> <p>- 소방방재본부 리모델링 작업장의 단열재 부착작업 근로자는 내측으로 추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체결 후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.</p> <p>※ 건설안전기본지침 P-12 (추락재해예방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)</p> |  | <p>2018.10.22</p> <p>1. 안전대 미착용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</p> |  |
| <p>○ 추락재해 예방</p> <p>- 작업발판 등의 자재가 안전난간 외측 단부에 적재되어 있어 운반작업 시 근로자 추락재해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 요망.</p> <p>※ 건설안전기본지침 P-12 (추락재해예방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)</p> |  | <p>2018.10.24</p> <p>1. 운반작업 시 근로자 추락재해를 유발하는 자재를 정리하여 근로자 추락재해 예방</p> |  |
| <p>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</p> <p>- 건축물 기초작업장은 벽체구간의 철근 조립시 상부의 부석이 낙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대책 강구 요망.</p> <p>※ 건설안전기본지침 P-21 (낙하 비래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)</p> |  | <p>2018.10.22</p> <p>1. 벽체 철근 작업 전 철거공사를 통하여 부석을 제거한 다음 작업할 예정.</p> | <p>NO IMAGE</p>  |

| | | | |
|--|---|--|---|
| <p>○ 가설통로 안전</p> <p>- A1 작업장은 지면에서 철근조립장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단 형태의 통로를 확보하기 바람.</p> <p>※ 건설안전기본지침 P-45 (작업자 통로확보 및 안전작업기준)</p> |  | <p>2018.10.22</p> <p>1. A1 작업장에서 지면으로 가는 불안정한 통로는 차단하고 주변에 시스템 비계를 통한 안전한 통로 확보</p> |  |
| <p>○ 가설통로 안전</p> <p>- A2 작업장은 근로자 전도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보완하기 바람.</p> <p>① 급경사의 통로 구간은 계단 또는 미끄럼막이 있는 경사로를 설치하여 관리하기 바람</p> <p>② 기초 저판 상단에서 굴착면 하부로 이동하기 위한 가설계단 설치 요망.</p> <p>※ 건설안전기본지침 P-45 (작업자 통로확보 및 안전작업기준)</p> |   | <p>2018.10.23</p> <p>1. 급경사 통로는 백호로 지반을 정리하고 라바콘으로 안전통로를 표시하여 근로자 통행안전 확보 2. 기초 저판 상단에서 굴착면 하부로 이동하기 위한 가설계단 설치 및 가설상부 자재 정리로 낙하에 의한 위험 예방</p> |   |
| <p>○ 감전재해 예방</p> <p>- A1 작업장의 분전반 및 철근 절곡기는 근로자 감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접지봉을 지하 75cm 이상으로 매설 후 사용하기 바람.</p> |   | <p>2018.10.23</p> <p>1. A1 작업장의 분전반 및 철근 절곡기는 근로자 감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접지봉을 지하 75cm 이상으로 매설</p> |   |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<p>○ 사면 안전</p> <p>- A1작업장 사면 상부 붕괴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항공마대 추가 설치 필요.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0조(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)</p> |  | <p>2018.10.25</p> <p>1. A1작업장 사면 상부 붕괴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항공마대 추가 및 천막 설치</p> |  |
| <p>○ 사면 안전</p> <p>- 소방행정타운 리모델링작업장 측면부의 사면은 우수에 의한 세굴이 발생되고 있으니 배수처리계획을 검토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0조(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)</p> |  | <p>2018.10.26</p> <p>1. 소방행정타운 리모델링작업장 측면부의 사면에 토사다이크를 쌓아 우수를 유도 배수하여 세굴을 방지함</p> |  |
| <p>○ 흠막이가시설 안전</p> <p>- A1작업장의 사보강재 구간은 볼트체결이 밀착되도록 보완 요망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1조(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)</p> |  | <p>2018.10.24</p> <p>1. A1작업장의 사보강재 구간은 볼트체결이 밀착되도록 조임 및 확인</p> |  |
| <p>○ 흠막이가시설 안전</p> <p>- A2작업장의 버팀보는 단면이 손실되어 있으니 보완 조치 요망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1조(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)</p> |  | <p>2018.10.24</p> <p>1. A2작업장의 버팀보의 손실된 단면 보강</p> |  |

| | | | |
|--|--|---|--|
| <p>○ 품질관리</p> <p>- A1작업장은 장비 충격으로 인하여 목적물 모서리부가 파손되어 있으니 보수하고 향후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 유도 철거 요망.</p> <p>- 아울러 철근은 이물질이 묻어 부착력이 저하될 수 있으니 보양 조치 요망.</p> |  | <p>2018.10.23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파손된 모서리부 보수 2. 공정상 철근은 모두 배근하여 배근시 브러쉬로 이물질 제거 |  |
| <p>○ 품질관리</p> <p>- 건축물 기초 및 벽체 조립 작업장은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사항을 보완하기 바람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원형기둥 구간 철근의 순간격이 협소 ② 벽체 기둥 합벽 구간은 상부구간의 기존구조물을 철거하여 벽체의 두께를 확보하기 바람 |  | <p>2018.10.26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철근 이물질 제거 및 겹이음에 의한 순간격이 부족한 부분은 구조검토를 통하여 보완예정 2. 벽체 기둥 합벽 구간은 상부구간의 기존구조물을 철거하여 상부의 기둥구조물을 제거한 다음 작업할 예정. |  |